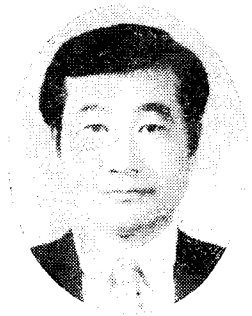

西歐의 建設工事紛爭處理와 運用에 關하여(1)

成均館大工大招聘講師 金 峋 根*

— 目 次 —

1. 머리말
2. 仲裁의 語義
3. 仲裁의 메린(Merit)
4. 契約紛爭의 解決과 그 手段으로서의 仲裁
5. 仲裁의 分類
6. 國際的仲裁機關
7. 國際商業會議所의 仲裁規則槪要
8. 先進國의 建設工事仲裁制度
8.1. 美國篇
8.2. 英國篇
8.3. 西獨篇
9. 맺는말
10. 參考文獻및資料目錄

1. 머 리 말

國際間의 商事仲裁에 關하여 關心을 깊게 갖기 始作한것은 筆者가 1964年 中葉 建設部가 蔚山灣號浚渫船 導入當時, 調達廳을 通하여 國際入札한 結果, 美國의 Ellicott Machine Corporation과 日本의 日本鋼管(株)(N.K.K)이 技術合作으로 納品케된바, 同浚渫船 導入契約上 두가지 紛爭이 納品者와 政府當局間에 發生하여 한때 契約條件에 따라서 第三國에서 仲裁에 付議할 段階 直前에 이르렀던 일이 있었다. 이問題는 仲裁에 이르지않고, 納品者인 美國의 E.M.C社의 要求條件(旣成高支拂과 L/C의 去來銀行間의 Confirmation Charges等두가지)을 받아 들이므로서 一段은 收拾이 되었고, 둘째로는 1968年 大韓浚渫公社在職時 迎日灣號浚渫船을 和蘭의 I.H.C社로부터 商業借款導入에 있어서 契約書의 草案은 蔚山灣號導入當時의 契約書를 土臺로 作成해 나갔으나, 技術者로서 이러한 業務에 從事時 側近에 資料가 없어서 困難을 겪게되었고 契約書上의 仲裁條項도 I.C.C(國際商業會議所)의 仲裁에 따른다는 常識的인 槪念밖에 몰랐고, 이것이 刺戟되어 積極的으로 工夫하게 된것이다. 더욱이 中東建設輸出붐에 따라서 이에關하여 繼續的인 硏究와努力을 傾注하여왔고, 海外建設에 從事하는 技術者에게는 必要熟知될 事項으로서 英國의 I.C.E(土木學會)에서는 專門技術士(Charted Engineer)資格試驗에는 Management topics속에 FIDIC와 I.C.E 契約條件이 試驗範圍속에 含有되어있다는 것을 銘記하고 싶다.

다음에 西歐各國에서 建設工事紛爭處理와 그 運用에 있어서 仲裁制度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仲裁의 語義

仲裁라함은 契約上의 兩當事業者가 司法三審制度上의 裁判所에서의 訴訟을 代身해서 紛爭(Dis-

*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岸)

pute)을 專門家로 構成된 公平한 機關에 提出하여 그解決을 求하는 節次이며, 이方法에 따르는 訴訟때문에 생기는 法律上의 諸般節次 遲延과 費用上의 많은것은 避할수가 있게 된다.

一般的으로 말하기를 仲裁(Arbitration)는 裁判(Litigation)보다 낫고 調停(Concilation)(日本에서는 斡旋式은 調停)은 仲裁보다 나으며 紛爭의 豫防은 調停보다 낫다고 한다.

그節次가 簡便하고 費用이 적게 들며 迅速性을 가진 紛爭解決方法이 調停과 仲裁란것을 잘 알고 있으나, 仲裁의 메릳(Merit)가 무엇인지 잘알아두어야 그 語義의 明確한것을 把握했다고 볼수있다.

3. 仲裁의 메릳

仲裁에 關한 機能的考察을 試圖할 경우에 우리는 法律制度의 特質과 仲裁政策의 多樣性에 注目하고 極히 細部的인 考察은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의 有用性은 細部的인 그 方途에 左右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여기서는 一般的인 仲裁의 効用을 列擧하여 본다.

(ㄱ) 迅速性(Speedy) : 訴訟에 의하여 解決할 경우에는 相當히 長期間의 遲延을 覺悟하지 않으면 안된다. 裁判所에는 深刻한 事件의 記錄(判例)을 보게되고, 더우기 終局判決에는 抗訴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에 反하여 商事仲裁에 要하는 期間은 慣例上 거의 2個月以內라 한다. 建設工事紛爭인경우 迅速性에 關한 메릳은 더말할것없이 至大하다. 또 企業去來上의 얻는 利益도 큰 것이다.

(ㄴ) 經濟性(Economy) : 仲裁는 訴訟과 比較해서 훨씬 低廉한 것이다. 困難한 訴訟進行을 뒤풀이하는 費用은 省略될 수 있고, 또, 仲裁人은 專門家이므로 專門家證人의 費用도 節約하는 일이 많다.

仲裁人은 無料奉仕를 하는경우가 많은것도 費用을 引下시키는 한要因이 되기도 한다. 더우기 辯護士에 依한 代理가 抑制되고 있고, 當事者의 費用支出은 많이 減少케 된다. 當事者에게는 便利한 時日과 場所를 選擇하기 때문에 給料라든가 收益을 犧牲치 않아도 되고, 紛爭處理에 隨伴하는 負擔은 그만큼 적을 것이다.

(ㄷ) 專門性(Specialize) : 仲裁의 메릳中에서 特히 指摘되는것은 仲裁人은 各分野의 專門家라는 것이다. 例컨대, 美國仲裁協會(A.A.A)의 仲裁事件에서는 事件의 折半은 적어도 一人의 專門家가 包含되어 있다고 한다. 商事仲裁를 利用하는것은 大部分 專門知識에 信賴하고 있고, 工事上의 國際的인 慣例(或은 慣習) 工事에 關聯된 豊富한 知識과 經驗은 貴重한것이다. 問題는 이 利點이 紛爭發生時에도 큰役割을 遂行하기 때문이다. 確實히 關與事項에 精通한 仲裁人은 企業을 위해 信賴를 둘수있는 判定者가 될수 있으나, 受惠者에게는 어떨지 別途의 問題이기도 하다. 專門知識自體는 適切한 判斷에 도움이 되는것이고, 充分히 客觀性이 保證되어 있으며 受惠者에게는 그것은 有益하다고 생각된다.

(ㄹ) 非公開性(Un-Publicity) : 企業間의 紛爭에 있어서 그公開는 雙方에게 利롭지 못한 것이다. 勝敗가 어느쪽에 決定되든 紛爭의 存在自體가 會社의 名譽와 聲價에 損傷을 주고, 止揚된 株價下落은 招來할수도 있다. 여기서 仲裁의 陰密性은 크게 魅力的인 것이다. 仲裁에 있어서 當事者間에 特別한 合意가 없는限 第三者가 그 審理事項을 傍聽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非公開에는 또한가지 메릳이 있다. 公開法廷에서는 非難과 反目이 서로 오고가서 友好的인 關係에 破綻을 免하기 어려우나, 仲裁인 경우에는 조용한 審理가 可能하고, 商去來關係의 維持도 可能하다.

(ㅁ) 柔軟性(Flexibility) : 仲裁는 裁判과 比較해서 좀더 인훠말(Informal)한 것이다. 實地로 仲裁時 번거로운 證據法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고, 當事者가 提出하는 證據의 可否에 關해서 仲裁人은 廣範圍한 裁量權을 갖고 있고, 裁判所는 仲裁人의 措置를 取消할 수가 없다. 더우기 仲裁人은 現行法體系에 嚴格하게 拘束되는일 없이 衡平(Equity)에 基礎를 두어 判斷을 내릴 수가 있다. 거기서 仲裁에는 그節次에 彈力性이 있고 受惠者는 辯護士의 助力없이 權利를 行使할수있는 可能性이 높다. 仲裁에 있어서 仲裁人은 獨自的으로 調査를 開始할수 있고, 當事者의 提案에 依하지않고 職權으로 罰則付召喚令狀을

發付할 수가 있다. 審理場所以外의 곳에서 現場檢證을 할수있는 點도 仲裁의 한長點인 것이다.

(ㅂ) 便利性(Convenience) : 仲裁는 當事者가 合意한 場所에서 願하는 時間에 行하여 지므로 受惠者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例컨대 固定된 物體에 關한 紛爭이면 그場所에서 審理할 수가 있어서, 그利點은 매우 큰것이다. 即 場所와 때를 가리지않고, 초저녁에도 審理를 하거나 週末에도 審理期日을 그스케쥴에 넣을수 있어서 受惠者에게는 勤務를 犧牲치않고 끝낼 便利한 點도 있다. 이러한 利點은 紛爭이된 工事現場에서 바로 審理도 할수 있다. 即 本來의 社會的活動에 混亂없이 審理할수 있어서, 仲裁人에게는 바람직하며 이런까닭으로해서 無報酬로 奉仕하는 仲裁人에게는 매우 便한것이 된다.

(ㅅ) 公正性(Rightfully) : 이 公正하다는 要素가 仲裁의 큰 魅力인 것이다. 仲裁의 强點은 正義感에 바탕을 두어서 判斷하는데 있다. 美國에서 仲裁人을 對象으로 調査한바에 依하면 그 80%는 現行法의 基準範圍內에서 判斷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되나 現行法을 無視하는쪽이 公正한 判斷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現行法을 無視할수있다고 하는者가 90%程度를 차지한다고 한다. 現行法은 尊重되어있으나, 正義앞에는 讓步하지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仲裁人의 普通的인 態度인 것이다.

衡平에依한 判斷은 裁判所에서도 不可能한것은 아니나, 그權能은 法律審理에 限定되는 것이다. 이에對해 仲裁는 事實審理의 段階에서 이와같은 彈力的인 判斷이 許容되는 것이다.

(ㅇ) 終局性(Finality) : 仲裁가 갖고있는 固有의 特性으로서 終局性이라는 것이다. 仲裁에 있어서 當事者가 仲裁人의 判斷에 自主的으로 服從한 趣旨에 合意되어 있으므로해서, 仲裁判斷에 自主的으로 承服하는者가 美國에서 約 90%에 이른다고 한다.

仲裁判斷에 對하여는 司法三審制와같이 上訴의 餘地가 없다. 實地로 仲裁判斷의 效力에 紛爭이 없는것은 아니로되, 取消될 原因은 極히 적다. 主要한 取消原因은 仲裁人의 偏見, 不公正한데 있고, 이러한것이 當事者에게 提示되지 않었을때에 限해서 問題가 된다. 當事者의 合意가 있으면 勿論, 넓게 取消될 餘地가 認定되나 現行法規에서나 一般的으로 取消의 餘地는 狹少한것이다. 具體的인 取消原因으로서는 證據物의 提出을 許容치 않었거나, 相當한 理由가 있는데도 期日의 變更을 許諾치 않었거나, 審理過程에서 當事者의 한쪽利益을 害치는 非行事實이 있어서 仲裁人이 그權限을 超越해서 行動한 일들인 것이다.

4. 契約紛爭의 解決과 그 手段으로서의 仲裁

海外建設工事契約에 關하여 發注者 或은 그代理人(法的受任關係上의)으로서의 施工監理技師와 都給者間에 紛爭(Dispute)이 發生했을경우 어떠한 方法이 있는가하면은 英國의 I.C.E(Royal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標準約款이나 或은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rs Conseils : 國際콘설팅엔지니어聯合會)의 標準約款에 따르는 工事契約에서는 다음과같은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

(ㄱ) 示談(give and take)
(ㄴ) 變更命令(variation order)
(ㄷ) 監理技師의 指示(Instruction by the Engineer)
(ㄹ) 當事者가 受理한 監理技師의 裁量(Adecision of the Engineer accepted by the Parties)
(ㅁ) 仲裁(Arbitration)

建設工事施工中에 일어나는 紛爭解決의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같은 節次가 一般的이다. 爲先 增加費用이 發生하면 支拂을 받을수있는가의 妥當性을 監理技師와 都給者間에 相議를 한다. 여기서 諒解를 얻으면 追加費用支拂에 關하여 (ㄴ)項의 變更命令이 내려진다. 그러나 合意에 이르지못하고, 더우기 不服의 提議를 할경우 크레임(Claim) 形式으로 契約書에 적힌 方法대로 期日에 맞추어서 文書가 提出케 된다. 이것을 受理하여 發注者의 代理人인 監理技師와 都給者間에 再次 協議를 하여 合意에 이르면 (ㅁ)項대로 進行하고, 協議決裂時에는 (ㄷ)項의 監理技師의 指示가 내려진다. 이것이 契約當事者間에 接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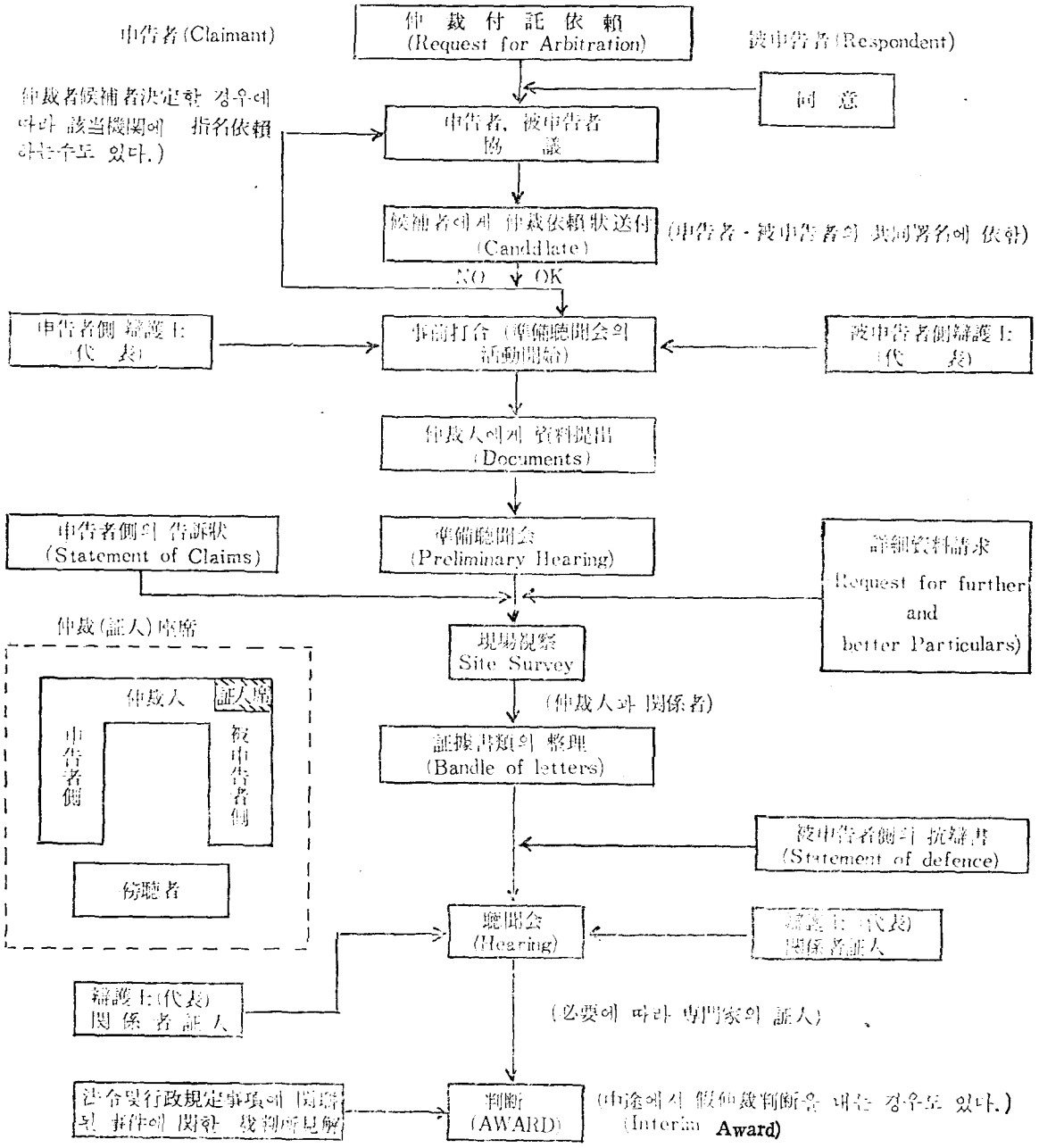

그림 1 仲裁作業의 흐름도(flow-chart)

되면 最終的으로 (ㄹ)項으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合意에 到達치 못하는 경우에는 (ㅁ)項의 仲裁에 提訴하여 仲裁人의 判斷에 委託하게 되는것이다. 이와같은 仲裁의 흐름을 圖表化한것이 그림-1과 같다.

(ㅁ)項의 仲裁에 關하여는 I.C.E의 標準約款中에는 主로 두種類의 仲裁委託이 생각되고 있다.

① 第12案中에서 自然條件의 變動이나 人爲的인 障碍物에對한 對策에關한 크레임과 仲裁

② 第66條의 一般的인 크레임과仲裁, 이外에 FIDIC의 標準契約約款에서는 ICE의 第12條에서 條文化한것처럼 自然條件 其他에 關한 仲裁委託을 特別하게 取扱치않고 第67條속에서 一般的인 仲裁委託으로서 一括하여 仲裁를 取扱하고 있다.

海外建設工事契約에는 必須的으로 紛爭解決의 條項(Settlement of disputes)이 挿入되어 紛爭解決에는 仲裁(Arbitration)에 依한다는것이 거이 明示되여 있다.

이建設工事는 住宅, 道路, 港灣等 社會間接資本投資事業에 關聯되는것을 爲始하여 프랜트에 關한것이 많고, 이와같은경우의 技術的契約紛爭解決에는 仲裁가 亦是 널리 活用되고 있다. 紛爭發生에對한 對策으로서는 契約當事者인 發注者, 都給業者뿐만 아니다, 國際協力을 推進하고 있는 國際金融機關이나 先進國의 海外援助擔當部署에서도 重大한 關心事로 되어 있다. 即 "世界銀行과 IDA(第二世界銀)의 融資에依한 調達案內書(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WORLD BANK LOANS and IDA CREDITS (August, 1975)"에는 다음과같은 紛爭解決條項이 있다.

Settlement of Disputes :

It is advisable to include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provisions dealing with the applicable law and the foru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perience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ay have certain practical advantages over other dispute settling methods. Borrowers should therfore consider the advisability of providing for this type of arbitration in contract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The Bank, however, should nct be named arbitrator or be asked to name an arbitrator(契約書에는 準據法과 機關을 明示한 紛爭解決條項을 認定하는것이 바람직하다. 過去의 經體에서 다른 紛爭解決보담은 國際商事仲裁로서 다루는것이 實地的인 利點이 있는것이라 勸奬하고 있다. 그러므로 債務者는 物品購買나 工事調達時 契約書에 이와같은 仲裁條項을 明示한것을 銘記할일이다. 그러나 銀行으로서는 仲裁者의 人名이나 그指名에 關與치 않는다.)

이外에도 美國의 海外援助局(USAID)이 定한 "콘설탠트業務에 關한 案內書(AID CAPITAL PROJECTS GUIDE LINES ENGINEERING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1969)"와 "建設工事에 關한 案內書(AID CAPITAL PROJECTS GUIDELINES BORROWER PROCUREMENT OF CONSTRUTION SERVICES 1969)"에서도 같은 條項이 있다. 前者의 콘설탠드業務의 경우를 例로 들면 다음과 같다.

Disputes and Appeals(紛爭解決)

A clause must be included which.

(i) Establishes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n respect to a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ii) Specifies the manner and method of appealing from any decision on such a dispute.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borrower country law, A.I.D favors inclusion in the contract of a provision for arbitration of disputes by an impartial body, such a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of the IBRD if the parties are eligible where the laws of a local country prohibit such provision, alternative provisions satisfactory to A.I.D must be made for arbitration or other metho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契約紛爭이 惹起되었을때 그處理의 節次를 明示할 契約條項과 紛爭解決判斷에 對하여 不服을 提議할 方法을 明示한 條項을 挿入한뒤에, AID當局으로서는 借入國의 法이 許諾하는 範圍內에서 中

立者에 依한 紛爭의 仲裁를 希望하고 있다. 即, 그 中立者로서 國際商業會議所(俗稱 I.C.C)나 世銀의 國際投資紛爭解決센타(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들수있다. 萬一, 當事國의 法律이 이와같은 紛爭解決條項設定을 禁止할것 같으면 滿足할만한 代案條項을 AID로서는 仲裁나 紛爭解決의 方法을 模索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I.C.E나 FIDIC의 標準條項뿐만 아니라 各國際金融機關에서도 紛爭解決에 關하여는 當然히 契約上의 措置로서 仲裁를 勸奬하고 있다.

5. 仲裁의 分類

仲裁의 分類에는 仲裁機關 或은 仲裁人의 選定方式에 依한경우와 仲裁의 開催地와 그準據法에 依한경우가 있을 것이다. 前者에서는 當初에 仲裁를 付(委)託하는 機關을 定해 놓는 機關仲裁(Institutional arbitration)와 紛爭發生後 兩當事者間에 付託하는 仲裁人 或은 仲裁機關의 경우에는 準據法에서 定해진 任意仲裁로 分類된다. 國際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仲裁機關은 數없이 많고, FIDIC에 依한경우에는 仲裁機關을 國際商業會議所(I.C.E)로 第67條에 定해져 있는 바와같이 機關仲裁가 一般的으로 簡便하다고 생각되나, 그나라의 標準契約 約款上 任意仲裁方式을 定해 놓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경우에나 미리 對備할 必要가 있다.

機關仲裁이면 付託을 받은 機關自體로는 仲裁節次에 關한 規則이 있고, 實地經驗을 쌓은 專門家의 能熟한 仲裁가 期待될수 있다. 그러나 任意仲裁의 경우, 仲裁條項中에는 機關의 指定이 없으므로, 紛爭이 發生한 時點에서 再次 仲裁의 規約을 具體的으로 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人의 選定方法을 미리 定해 놓는 경우도 있으나 그中에는 」仲裁人의 選定에는 當事者間의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某氏의 決斷에 依해서 仲裁人을 定한다」等의 拘束措置를 하는 경우도 있다. 仲裁人의 選定方法이 미리 定해져 있지 않은경우에는 紛爭發生後에 機關仲裁로 옮기는것도 可能한 것이다.

1976年 4月28日 UN國際商去來法委員會는 任意仲裁의 경우에 便利하도록 全文41個條에 亘한 標準仲裁規則(UNITRAL Arbitrarion Rules)을 議決한바 있다(R—1 要參照). 一般的傾向으로서 仲裁法이 있는 나라에서는 自國法을 準據法으로 適用토록 要求하나, 國際機關에서에 借款에의한 事業에서는 機關仲裁를 勸奬하는 일이 많고, 그러한 仲裁 規則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準據法 規則이 明示되어 있지 않을경우, 雙方의 讓解下에 유엔 國際商去來委員會(UNCITRAL)의 規則 等을 採擇하게 되면은 그節次가 簡便해 질것이다.

後者의 開催地와 準據法에 依한 分類라함은 仲裁判定의 執行上 國內仲裁判定(Domestic award)인가, 外國에서 執行된 外國仲裁判定(foreign award)인가를 말한다. 國內仲裁判定은 勿論, 國內法의 테두리속에서 執行되면은 되나, 外國仲裁判定의 경우 어떻게 執行强制되는가에 있다.

外國仲裁判定이 이루어질때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을 指名한 裁判所의 所在 國以外의 나라에서 내려진 仲裁判定과 前記한 裁判所의 所在國에서 내려진 仲裁判定中에서 準據法으로서 外國法이 指定된경우의 그種類가 包含된다.

國際間의 商去來가 漸次로 擴大됨에 따라서 國際的인 契約紛爭이 增大하는 傾向에 놓여 있는것은 前述한 바와 같고 이러한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仲裁가 널리 利用하게 되어 왔으나 仲裁判定의 執行은 原來, 西歐에서 商業會議所(I.C.C)나 同業組合(Trade Associations)等의 內部規定에 依한것이었고, 이러한 組織體에서 除名等의 制裁를 武器로 하여 社會的 存立을 威脅하므로서 强制的機能을 發揮하여 온것이다.

國際間의 契約紛爭의 그解決은 裁判에 回付되면은 國際民事訴訟法, 國際私法을 걸쳐서 管轄裁判所와 準據法이 定해지는 것이나, 仲裁條項에 依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國際法은 回避하고, 多國間條約에 依해서 統制하는것이 最適인 것으로서 現今까지 數많은 條約이 締結되어 있다.

이러한 國際間의 條約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1927年 9月26日 「外國仲裁決定의 執行에 關한 제네바協約」(1927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23年 9月 제네바에서 「仲裁條項에 關한 議定書」(Geneva Protocolon Arbitration Clauses)가 定한 「相異한 加盟國의 法域(jurisdiction)에 服從하는 當事者間에는 將來의 紛爭에 對備한 仲裁契約條項 Clause Compromissocre의 效力을 認定하고, 이에 따르는 仲裁判定은 加盟國은 執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具體性이 缺乏된 議定書를 改正하여, 仲裁地도 協約國內에 所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加盟國裁判所에서의 仲裁判定의 承認執行의 要件을 具體的으로 定했다. 그후, 이協約도 未備한點이 있다하여 1958年 뉴욕協約이 成立한 것이다.

(2) 1958年 6月10日 「外國仲裁判定의 承認및 執行에 關한 協約」(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27年에 協定된 제네바協約이 適用되지않게 되므로서 뉴욕協約에 吸收된 形式이 되었고, 이 協約의 特徵은 外國仲裁判斷의 承認, 執行의 節次面에서 簡素化된 點이다. 申告者는 承認執行을 求하는데 仲裁判定의 原本 或은 그謄本을 提出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고 承認을 拒否했을 경우에는 被告 者側은 拒否事由가 될 證據提示 責任을 지게 되었다.

(3) 1958年 6月10日 「國際商事仲裁에 關한 國際聯合建議文」(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 1963年 3月23日 「國家와 他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解決에 關한 워싱톤協約」(1965 Washingt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世界銀行(IBRD)의 努力으로 成立되어 約70餘個國(1977年 8月31日 現在)이 批准하고 있는 이 協約은 開發途上國에 對한 프랜트輸出, 石油, 깨스, 鑛物資源의 採掘請負의 利權契約(Concession) 合作企業의 設立이나 直接投資나 投資活動을 活潑化되면서 相對國과 外國의 投資家사이에 紛爭이 일어나는 頻度가 많아져서, 그 解決策으로서 調停과 仲裁에 依하는것으로 定하고 있다.

實地的인 節次는 이 協約으로 設立된 國際投資紛爭解決센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臨하고 있다.

(5) 1980年 4月11日 「國際商品賣買契約에 關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一名, Vienna Convention)

오지리國 비엔나에서 연린 國際商品賣買契約에 關한 國際聯合會議에서 採擇한 것으로 유엔本部에서 加入促進中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現在, 加入檢討中에 있음.

6. 國際的仲裁機關

前述한바와같이 各國은 제各其 仲裁法을 定하여 國內仲裁를 處理하고 있으나, 그仲裁法의 構成, 內容은 統一되어 있지않고 그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고, 各國이 共通的인 法아래서 仲裁를 推進하게 된다면은 理想이겠고, 實現不可能한 것이다. 多國籍企業과 海外投資및 合作企業이 增加趨勢에 있는 現今에 이르러 國際的 仲裁紛爭도 이에 따라 顯著하게 눈에 띠기 始作했고, 各國共用의 常設國際仲裁機關의 設置가 要望되면서 同時에 自國內의 仲裁機關도 國際仲裁를 取扱할 體制를 整備하기에 이르렀다. 常設된 國際仲裁機關과 主要各國의 國際仲裁機關을 표—1에 적는다.

표—1 **國際商事仲裁機關一覽表(SGK)**

國名	仲裁機關名稱	關係當事國	備考
國際機關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워싱톤 가본, 상아해안 (美)자마이카, 모롯코	1966年設立
〃	THE CENTER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파리74會員國(英國만이 (佛) 加入치 않음)	1923年設立
韓國	國際商事仲裁院	서 울	1980年設立
오스트리아	THE ARBITRAL CENTER OF THE FEDERAL ECONOMIC CHAMBER	원	1974年設立
西獨	HAMBURG FRINDRY ARBITRATION	함브르크	1904年設立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ATION) (JCA)	東 京	1953年設立
英國	LONDON COURT OF ARBITRATION (LCA)	런 던	1892年設立
美國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뉴 욕	1926年設立
和蘭	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롯떨담	1949年設立
伊太利	ASSOCIATION ITALLIANA PER LARBITRATO	로 마	1958年設立
印度	THE INDIAN COUNCIL ARBITRATION	뉴데리	1965年設立
瑞典	THE STOCKHOLM ARBITRATION INSTITUTE	스독홀무	1949年設立
瑞西	THE COUNT OF ARBITRATION OF THE JURICH CHAMBER OF COMMERCE	츄릿히	1937年設立

<계속>